

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2. 12. 2.>

자원순환보증금액(제12조의2 관련)

1.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

가.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

대상 품목	규격	자원순환보증금액
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	190ml 미만	20원/개
	190ml 이상 400ml 미만	40원/개
	400ml 이상 1,000ml 미만	50원/개
	1,000ml 이상	100원 이상 300원 이하/개

나.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

대상 품목	규격	자원순환보증금액
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	190ml 미만	70원/개
	190ml 이상 400ml 미만	100원/개
	400ml 이상 1,000ml 미만	130원/개
	1,000ml 이상	350원/개

2.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

대상 품목	자원순환보증금액
영 제17조제4항 의 제품	300원/개